

의안번호	제36호
의결연월일	2017. 6. 8.

논산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7년 5월 23일 논산시장
- 나. 회부일자 : 2017년 5월 23일
- 다. 상정일자 : 2017년 6월 8일,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

2. 제안 설명요지 (제안 설명자 : 산림공원과장)

가. 제안이유

- 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개정에 따라 변경 또는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, 중앙부처 불합리한 규제 개선계획에 따라 불합리한 규제를 삭제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개정 사항에 맞게 가로수로 한정된 조례명을 도시림 등으로 변경하고, 개정 법령에 부합하도록 내용 정비(안 제명, 안 제5조 제1항~제3항, 안 제6조의 제목, 안 제6조 제1항·제2항·제4항 및 제6항)
 ※도시림 등 : 도시림·생활림·가로수(법 제19조의2)
- 상위법 근거 조항 명시(안 제1조)
- 사용하지 않는 용어 삭제(안 제2조제2호)
- 법령에 근거 또는 위임 없는 가산금 및 부담금 강제징수 규정 삭제 (안 제13조 제2항·제3항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: 생략

4. 질의 및 답변 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